

인천지방법원 2024. 5. 8 선고 2023나7214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4. 5. 8 선고 2023나72144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3. 8. 8 선고 2022가소494269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철

변론종결 2024. 4. 3.

판결선고 2024. 5. 8.

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. 8. 8. 선고 2022가소494269 판결

주문

1.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는 원고에게 6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1. 13.부터 2023. 8. 8.까지는 연 5%,
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총비용 중 8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3. 제1의 가.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7,465,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1,465,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는, 원고가 C 주식회사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와 제습기 원재료 공급시스템 2대(이하 ‘이 사건 기계’라 한다) 제작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기계대금 27,465,680원을 수령하였는데, 원고와 피고, 소외 회사 사이에 우선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기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그러나 을 제1, 3,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이 사건 기계 제작 및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기는

하나, 이후 원고와 원고의 직원이던 피고, 소외 회사 사이에서 피고가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, 이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 27,465,68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피고가 수령권한 없이 위 기계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○ 원고는 피고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 2,7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, 인천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18. 9. 28. ① ‘소외 회사는 2017. 3. 2.경 원고와 이 사건 기계 제작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의 자금사정으로 납기일 준수가 어려워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제작비용 및 납기일 준수 등 제반사정을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와 납기일을 변경하였다’는 내용의 소외 회사의 확인서, ② 2017. 4. 20.경 소외 회사와 피고의 D 사이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, ③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와 이 사건 기계 제작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외 회사 직원 E의 진술, ④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여 제습기 케이스, 제습기 부품 등을 납품하였다는 거래처 대표자들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,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.

○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기계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(2017가소57499) 원고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,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(인천지방법원 2018나68745) 위 법원은 소외 회사가 당초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제작을 발주하였으나 원고의 자금으로 납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, 피고, 소외 회사 사이에서 피고가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자재 및 외주가공비를 조달하여 원고의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완성하고,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며, 추후 원고와 피고는 별도로 정산을 거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고,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 27,465,68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.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.

2. 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추후

이를 정산하기로 하였고,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제작에 다음과 같이 합계 17,885,28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산금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.

순번	2017. 3.2.부터 동년 4. 2일 까지	지출금액	지출내역	비고
1	피고 B 3월 급여	4,076,730	3월급여	갑제19호증참조
2	3월 식대	233,700	식대	갑제19호증참조
3	일용직 F 급여	1,451,000	급여	갑제19호증참조
4	일용직 G 급여	290,600 1,673,410	급여	갑제19호증참조
5	직원 H 급여	2,316,060	급여	갑제19호증참조
6	직원들 국민연금	1,000,000	직원들 연금	갑제19호증참조
7	전기세	656,690	전기세	갑제19호증참조
8	임대료	2,860,500	임대료	갑제19호증참조
9	기존자재대금	5,000,000		
합계		17,885,280		

나. 그러나 갑 제9부터 12, 20호증 등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위 표 기재 비용 전부가 이 사건 기계 제작에 소요된 원고 지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만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소외 회사에 납품한 후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,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600만 원인 사실을 자인하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자인하는 정산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1. 11. 13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준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. 8. 8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(지연손해금 기산점 부분)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

재판장 판사 윤정인, 판사 유성해, 판사 서희경